

학위수여규정

규정번호 : 2-2-1

제 정 일 : 1985.9.1

개 정 일 : 2018.6.1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학칙 제3조 및 대학원 학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의 종류)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4종으로 한다.

제 2 장 학사학위

제 3 조 (학위의 종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인 자에게는 다음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2009.5.9, 2010.3.1, 2010.10.4, 2014.3.1, 2014.6.20, 2015.6.29, 2016.5.20, 2016.8.31, 2017.2.23, 2017.7.31.)

대학(학부)	전공	학위명
영어대학	영어학과	문학사
	영미문학·문화학과	문학사
	EICC학과	문학사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문학사/지역학사
	FATI전공	문학사/지역학사
	프랑스·EU전공	문학사/지역학사
	독일어과	문학사/지역학사
	노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스페인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이탈리아어과	문학사/지역학사
	포르투갈어과	문학사/지역학사
	네덜란드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스칸디나비아어과	문학사/지역학사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아랍어과	문학사/지역학사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문학사/지역학사
	베트남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인도어과	문학사/지역학사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이란어과	문학사/지역학사
	몽골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전공	중국어언어문화학사
	중국어외교통상학부	중국어외교통상학사/중국정치경제학사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전공	문학사
	융합일본지역전공	지역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행정학과	행정학사
	언론·정보전공	커뮤니케이션학사
	광고·PR·브랜드전공	커뮤니케이션학사
	방송·영상·뉴미디어전공	커뮤니케이션학사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제학사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경영학부)	영어교육과	문학사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문학사
	독일어교육과	문학사
	한국어교육과	문학사
	중국어교육과	문학사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국제학사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Diplomacy전공	국제관계학사
	사회과학전공	사회과학학사
Language & Trade학부	Language & Trade전공	국제통상학사
인문대학	철학과	문학사
	사학과	문학사
	언어인지과학과	문학사
(지식콘텐츠학부)	지식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학사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문학사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문학사
	영미문학번역전공	문학사
	TESOL영어학전공	문학사
	독일어통번역학과	문학사
	스페인어통번역학과	문학사/지역학사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문학사
	중국어통번역학과	문학사
	일본어통번역학과	문학사
	태국어통번역학과	문학사
	아랍어통번역학과	문학사/지역학사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문학사
동유럽학대학	폴란드어과	문학사/지역학사
	루마니아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문학사/지역학사
	헝가리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문학사/지역학사
	우크라이나어과	문학사/지역학사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문학사
	브라질학과	문학사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문학사/지역학사
	인도학과	문학사
	중앙아시아학과	문학사
(아프리카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문학사
	서아프리카어전공	문학사
	남아프리카어전공	문학사
	러시아학과	문학사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국제스포츠레저전공	국제스포츠레저학사
	한국학과	국제지역학사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Global Business & Technology전공 국제금융학과	경영학사 경영학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공과대학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공학사(전자공학심화) 공학사/공학사(산업경영공학심화)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공학사
융합전공	BRICs전공 EU전공 동북아전공 문화콘텐츠학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정보·기록학전공 글로벌IT전공 국가리더전공 융복합소프트웨어전공 광역특화전공 세계문화예술경영전공 언어와공학전공 디지털인문한국학전공 지역경제개발협력전공 보험계리학전공	경제학사/문학사 유럽연합학사 동북아지역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공학사 공공정책학사 공학사 국제지역학사 문화예술학사 언어공학사 디지털한국학사 경제학사 경영학사

제 4 조 (취득요건)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각종 시험 또는 논문 제출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조 (학위증) 학사학위증은 별지 <서식 1-1, 1-2, 1-3> 와 같다.

제 3 장 석사학위

제 6 조 (학위종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전공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0.4, 2013.3.28, 2014.6.20, 2014.7.31, 2014.9.12, 2015.10.23, 2016.1.19, 2016.11.30, 2017.2.18, 2017.5.13, 2018.6.14)

학과	전공	학위
영어학과	영어학	언어학석사
영문학과	영문학	문학석사
영어번역학과	영어번역학	영어번역학석사
불어불문학과	불어학 불문학	언어학석사 문학석사
독어독문학과	독어학 독문학	언어학석사 문학석사
노어노문학과	노어학 노문학	언어학석사 문학석사
스페인어문학과	스페인어학 스페인문학	언어학석사 문학석사

이어이문학과	이어학	언어학석사
	이문학	문학석사
포어포문학과	포어학	언어학석사
	포문학	문학석사
스칸디나비아어문학과	스웨덴어학	언어학석사
	스웨덴문학	문학석사
TESOL학과	영어교육	문학석사
일어일문학과	일어학	언어학석사
	일문학	문학석사
중어중문학과	중어학	언어학석사
	중문학	문학석사
인도·아세안어문번역학과	힌디어학	언어학석사
	힌디문학	문학석사
	힌디번역학	번역학석사
	마·인어학	언어학석사
	마·인문학	문학석사
	마인번역학	번역학석사
	태국어학	언어학석사
	태국문학	문학석사
	태국번역학	번역학석사
	베트남어학	언어학석사
	베트남문학	문학석사
	베트남번역학	번역학석사
중동어문학과	아랍어학	언어학석사
	아랍문학	문학석사
	터어키어학	언어학석사
	터어키문학	문학석사
	이란어학	언어학석사
	이란문학	문학석사
아프리카어문학과	아프리카어학	언어학석사
	아프리카문학	문학석사
동유럽어문학과	폴란드어학	언어학석사
	폴란드문학	문학석사
	루마니아어학	언어학석사
	루마니아문학	문학석사
	헝가리어학	언어학석사
	헝가리문학	문학석사
	유고어학	언어학석사
	유고문학	문학석사
	체코어학	언어학석사
	체코문학	문학석사
	불가리아어학	언어학석사
	불가리아문학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언어학석사
	국문학	문학석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학석사

언어인지과학과	언어학	언어학석사
철학과	서양철학, 동양철학	철학석사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문학석사
	서양사, 과학사	문학석사
정보·기록학과	기록학	문학석사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	문화콘텐츠학석사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정치·경제, 인문·사회	문학석사
국제관계학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학석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정치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석사
법학과	공법, 사법	법학석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커뮤니케이션학석사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석사
	금융경제학	경제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경영학석사
	국제금융학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	경영학석사
글로벌스포츠학과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	글로벌스포츠학석사
	글로벌스포츠 사이언스	글로벌스포츠학석사
교육학과	교육정책	교육학석사
	상담심리	교육학석사
KFLI(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번역학석사
수학과	수학	이학석사
	금융수학	이학석사
물리학과	물리학	이학석사
화학과	화학, 생물화학	이학석사
통계학과	통계학	이학석사
환경학과	환경학, 대기환경과학	이학석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이학석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공학석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석사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 전자시스템공학	공학석사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네티틱스	공학석사
	산업경영공학	공학석사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석사
글로벌다형지식융합전공		공학석사
화학과 학·연·관·산협동과정	화학전공	이학석사

제 7 조 (논문제출자격)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은 등록 4회를 마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8 조 (논문제출기간) 석사학위 논문은 재학 중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때에는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9 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학 전공의 경우는 전공한 외국어로 작성함을 권장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FLEX(영어)로 하되 영어를 전공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 응시하여야 하고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는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중에서 택일하여 응시한다.

②외국어 시험은 FLEX 읽기영역 300점 이상(600점 만점) 득점을 합격으로 하며,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 및 전공외국어 시험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로 구분하여 출제,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FLEX는 점수 체계가 변경될 경우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합격 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

③외국어시험 문제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여 복수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외국어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⑤외국인 학생은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시험) ①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별 전공 특성상 종합시험 과목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9., 개정 2018.6.14)

④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5.10.23)

⑤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⑥ 종합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①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하여 그 심사를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 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합격을 결정한다.

제13조 (학위기) 석사학위기는 별지서식(2, 2-1)과 같다.(개정 2014.2.4)

제 4 장 박사학위

제14조 (학위종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박사학위 종별은 전공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2010.10.4, 2013.3.28, 2014.6.20, 2014.7.31, 2014.9.12, 2015.10.23, 2016.1.19, 2016.11.30, 2017.2.18, 2017.5.13, 2018.6.14)

학 과
영어학과

전공
영어학

학 위
언어학박사

영문학과	영문학	문학박사
영어번역학과	영어번역학	영어번역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불어학	언어학박사
	불문학	문학박사
독어독문학과	독어학	언어학박사
	독문학	문학박사
노어노문학과	노어학	언어학박사
	노문학	문학박사
스페인어문학과	스페인어학	언어학박사
	스페인문학	문학박사
TESOL 학 과	영어교육	문학박사
일어일문학과	일어학	언어학박사
	일문학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중어학	언어학박사
	중문학	문학박사
중국어문학과	아랍어문	언어학박사
	아랍문학	문학박사
동유럽어문학과	폴란드어학	언어학박사
	폴란드문학	문학박사
	루마니아어학	언어학박사
	루마니아문학	문학박사
	헝가리어학	언어학박사
	헝가리문학	문학박사
	유고어학	언어학박사
	유고문학	문학박사
	체코어학	언어학박사
	체코문학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언어학박사
	국문학	문학박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학박사
비교문학과	비교문학	문학박사
언어인지과학과	언어학	언어학박사
철학과	서양철학, 동양철학	철학박사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과학사	문학박사
정보·기록학과	기록학	문학박사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	문화콘텐츠학박사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정치·경제, 인문·사회	문학박사
국제관계학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제관계학박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박사
법학과	공 법, 사 법	법학박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커뮤니케이션학박사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국제금융학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교육학과	교육정책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교육학박사
KFLI(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번역학박사
수학과	수학	이학박사
	금융수학	이학박사
물리학과	물리학	이학박사
화학학과	화학, 생물화학	이학박사
통계학과	통계학	이학박사
환경학과	환경학, 대기환경과학	이학박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이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박사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 전자시스템공학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어널리틱스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	공학박사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박사
글로벌다형지식융합전공		공학박사
화학과 학·연·관·산협동과정	화학전공	이학박사

제15조 (논문제출자격)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은 등록 4회를 마치고 36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6조 (논문제출기간) 박사학위 논문은 재학 중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때에는 과정 수료 후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학 전공의 경우는 전공외국어로 작성함을 권장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8)

학 과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어문계열학과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번역학과, TESOL학과	전 공 영 어	FLEX(영어 이외 외국어) 단,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는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제2한문, 컴퓨터프로그래밍언어 중 택 1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제외) 비교문학과	FLEX(영어)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한 문	FLEX(영어)
	기타 어문계열 학과	해당 전공외국어	
기 타 학 과		FLEX(영어)	해당사항 없음

1. 단, 어문계열 학과의 외국인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 선택 시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

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2. 기타 학과의 외국인 학생은 제1외국어 과목 선택 시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은 FLEX 읽기영역 320점(600점 만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며,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 및 전공외국어 시험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로 구분하여 출제,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FLEX는 점수 체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합격 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

③외국어시험 문제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여 복수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19조 (종합시험) ①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자는 종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4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별 전공 특성상 종합시험 과목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9., 개정 2018.6.14)

④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종합시험의 출제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⑥ 종합시험은 연2회 실시하며,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20조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①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5인 이상을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하여 그 심사를 위촉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각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21조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그 합격을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 후 해당학기의 졸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정규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기에 논문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참고자료제출) 대학원위원회는 논문 심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위청구 자에게 논문의 번역문, 모형, 표본,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제출된 논문의 중심시 행하며 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의 호선으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구술시험 합격점수)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5조 (학위수여) ① 대학원위원회는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사 요지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의 시행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 (3, 3-1)에 학위기로 행한다.(개정 2014.2.4)

제26조 (학위 취소)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칭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대학교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논문의 공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명예박사학위

제28조 (자격)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9조 (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별지 서식(4)에 의한다.

제30조 (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14조 박사학위종별에 따른다.

제31조 (수여취소) 제26조 박사학위수여 취소 조항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자에게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① (시행일) 이 규정 제6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에 의한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학위 수여는 199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 1994학년도 후기 이전 입학생으로서 휴학 후 복학하여 신 교과 과정을 수료하면 공학석사를 수여한다.

2) 1995학년도 후기 수료 후 논문제출 만기(4학기)에 제출한 학생은 공학석사를 수여한다.

(6) ① (시행일) 이 규정 제3조는 1995년 10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3조의 개정에 의한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학위 수여는 1996학년도 후기까지 이 학사를 수여하고, 1997학년도 전기(1998년 2월)부터 공학사를 수여한다.

(7)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8)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대학원 학칙 제41조 및 학위수여규정 제8조, 제1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한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0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3)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중 제 6조, 제 14조는 2000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14)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7)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4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8)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4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0)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05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1)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3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04학년도 까지 입학한 무역학과 학생의 학과명칭은 국제통상학과(구무역학과)로 하며, 학위는 경영학사로 한다.
- (22)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3)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0학년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4) ① (시행일) 제11조 5항, 제19조 5항의 변경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14조의 명칭변경은 2007학년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5)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14조의 신설 전공은 2008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6)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의 신설 박사과정은 200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7)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8)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의 신설 학과, 전공 및 제14조의 신설 학과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10조(외국어시험) 및 제18조(외국어시험)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9)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30)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2)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제3조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3)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와 경우 2007년 이후 2010년 이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TESOL학과와 전공 및 학위명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4)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 제18조는 2013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5) 이 규정은 2014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6)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7) 이 규정은 2014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8) ①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40) 이 규정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4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규정 중 제6조, 제14조는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43) 이 규정은 2016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4)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제6조 및 제14조의 국제경영학과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 제6조의 동남·남아시아어문학과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4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제6조 및 제14조의 외국어로서한국어번역전공, 신문방송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변경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47) 이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6조 및 제14조의 교육학과 신설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 제6조 및 제14조의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변경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4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3조의 정보·기록학전공 명칭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5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적용) 제6조 및 제14조의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대학 전공(학사)

대학 전공(학사)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서식 1-2>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학위) : 대학 전공(학사)
부 전 공 :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대학 전공
학 위 : 학사(공학심화)
부 전 공 :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_____

<서식 2>

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번호 : 한국외대 ○○○○(석) ○○

M No. 000 Diploma No:HUFS0000(M)000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NAME (DATE OF BIRTH: Month Date, Year)

IN RECOGNITION OF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egree Title

WITH SPECIALITY IN Major

UNDER THE SEA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Ordinal No. DAY OF Month, Year

_____(signature)_____

Nam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al

_____(signature)_____

Nam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박 제 ○ ○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 박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번호 : 한국외대 ○○○○(박) ○○

D No. 000 Diploma No:HUFS0000(D)000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NAME (DATE OF BIRTH: Month Date, Year)

IN RECOGNITION OF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egree Title

WITH SPECIALITY IN Major

UNDER THE SEA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Ordinal No. DAY OF Month, Year

_____(signature)_____

Nam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al

_____(signature)_____

Nam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분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인류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 그 공적을 찬양
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번호 : 한국외대 ○○○○(명박) 제○○호